

부산·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공고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 제18조에 따라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발주자(허가권자)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 작성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3. 9.

부산·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

1. 명부등록 기간 : 2020. 3. 9. ~ 2021. 3. 8. (1년 간)
2. 명부등록 업체 : 총49개 업체(붙임 참조)
3.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: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」 제18조에
따르며,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음

- 아 래 -

○ 평가기준

심사항목	세부요소	배점		비고
		1억 미만	1억 이상	
사업수행 능력	실적 업무중첩도 신용도 등	40점	60점	○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 준용 ※1억 미만 : 300세대 미만 배점기준 적용 ※1억 이상 : 500~1천세대 미만 배점기준 적용 ○ 공사규모,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±10점범위 내 조정가능
입찰가격	가격	60점	40점	
		계 100점		

4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금회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포함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한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할 시 지정 대상 업체에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시공자가 우리 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공고를 하게 되며, 공고 장소는 우리 청 홈페이지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개별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.
- 다. 사업수행능력과 가격의 배점기준은 「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」(국토부고시 제2018-465호, 2018.7.31.) [별표] ‘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’을 준용한 다음(안)을 기본으로 공사규모,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±10점 범위 내 조정할 수 있습니다.
- 라.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제도의 취지와 운용방식의 유사성이 있는 「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(국토부고시 제2019-960호, 2019.12.24.) [별표3] ‘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’을 준용할 예정입니다.
- 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(☎ 051-979-5345, 전현준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. 끝.